

# 학과장 운영위원회 운영 규정

전문제정 2018.03.22., 2024.03.01.

## 제1조 (목적)

본 규정은 학과장 운영위원회의 조직, 기능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## 제2조 (기능)

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논의한다.<개정 2019.04.17.>

- ① 학과업무 전반에 대한 업무 조정 및 개선
- ② 대학 주요정책 확산 및 공유
- ③ 각종 평가에 대한 개선 및 환류방안
- ④ 대학행정에 관한 주요사항<개정 2019.04.17.>
- ⑤ 기타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

## 제3조 (구성)

- ① 위원회는 위원장,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각 부처장, 산학협력단장, 센터장, 부속기관장 및 각 계열(학과)장(전공장포함)을 당연직으로 한다.<개정 2019.04. 17., 2024.03.01.>
- ② 위원회 위원장은 총장으로 하며 위원회를 대표하여 위원회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.
- ③ 부위원장은 교무처장으로 하며 위원장을 보좌하고 부득이한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한다.<개정 2019.04.17., 2024.00.00.>
- ④ 위원회는 간사를 두며 간사는 교무팀 직원으로 하며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제반업무를 담당한다.<개정 2019.04.17.>

## 제4조 (위원장의 직무)

-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,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.
-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.

## 제5조 (회의 및 의결)

- ①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와 위원의 요청이 있을 경우 개최한다.
-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 수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 수 이상의 찬성으로 심의되며 가/부 동수일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.
- ③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.

제6조 (기타)

이 규정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따로 정한다.

부 칙(2018.03.22.)

제1조 (시행일)

이 규정은 2018년 03월 22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(2019.04.17.)

제1조 (시행일)

이 규정은 2019년 04월 17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(2024.03.01.)

제1조 (시행일)

이 규정은 2024년 03월 01일부터 시행한다.